

【사건번호 2018-025】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 * 원동기 최고출력값, 연료소비율,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취득금액(10만원 단위)
- 데이터 신청 목적
 -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서비스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자동차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정보 등 데이터 (이하 '이 사건 데이터 함')를 제공 신청
 - * (신규 제공) 원동기최고출력값, 연료소비율,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제공범위 확대) 취득금액(현행 100만원 단위 → 10만원 단위)
 - ※ 신청인은 당초 소유자 주소(현행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공범위 확대를 신청하였으나, 후에 당사자 협의를 통해 철회함
- 피신청인이 데이터 가공의무 부존재 및 과거 데이터 제공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

3. 사실조사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
 - *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 서식
-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자동차제원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
 - * 자동차제원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등

- 신청인이 제공신청한 데이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나.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현황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15-012사건에서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또는 분리조치 하여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권고
- 피신청인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13호(2014.3.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미래창조과학부·NIA발행)」을 참고하여, 신청 데이터 중 개인정보성이 있는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 후 제공기로 함
- 예컨대 차량등록번호는 숫자 부분을 마스킹하여 “경기XX우XXXX”, 차대번호는 뒷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마스킹하여 “KMHDG41DBCUXXXXXX”의 형태로 제공하고, 소유자 등록번호는 연령을 범주화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30대 남자”의 형태로 제공
- 이 사건 데이터 중 “취득금액”은 실제 **취득금액의 백만원 단위**까지, “소유자 주소”는 **시/군/구 단위**까지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협의함

다.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임(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라.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여섯 차례의 분쟁조정(2014-014사건, 2015-012사건, 2016-005사건, 2017-007사건, 2017-028, 2018-014)을 진행하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관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11.선고 2009두6001판결)”고 판시한 바 있음

- 위원회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서비스 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분쟁조정 2016-015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토록 사전조정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2015-012, 2017-028),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2018-012)의 경우 데이터의 가공 및 치환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

-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가공(데이터 추출 및 오류 정제 등)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가공을 위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음(대검찰청 범죄 분석데이터 사건(2018-020))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 권리포함정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SW개발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